

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춘희 의원)

의안 번호	41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: 2022년 10월 20일

발 의 자 박춘희 의원

찬 성 자 심현정, 이창열, 남진삼의원

1.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다량배출사업장관련 각종 의무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지도·점검 사항을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지도·점검여부를 재량에서 의무로 규정(안제17조 관련)

나. 감량무이행계획서 상 지도·점검 대상을 명확히 규정(안제17조제1호 관련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붙임 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입법예고 : 2022. 09. 29. ~ 2022. 10. 19.(20일간), 의견 없음.

라. 집행기관의견수렴 : 2022. 09. 28.~ 2022. 10. 5. 의견 없음.

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도·점검할 수 있다”를 “지도·점검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이행여부”를 “발생억제방법, 처리방법,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(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)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발생억제 등에 대한 지도 · 점검)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 1회 이상 <u>지도 · 점검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다량배출사업장의 <u>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이행여부</u>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</p> <p>2. <u>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</u></p> <p>3. (생 략)</p>	<p>제17조(발생억제 등에 대한 지도 · 점검) ----- ----- -- <u>지도 · 점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----- <u>발생억제방법, 처리방법,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 (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) 등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</u>---</p> <p><삭 제></p> <p>2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

[관련법령]

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·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박춘희의원
연락처	(033) 330 -2502